

WTO 체제하의 유가공 산업

정 명 섭
한국식품위생연구원

I. 서 론

인간이 매일의 생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식품이 필수 요소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人)에게 좋은(양·良) 것을 식(食)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식품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안전성 다시 말해서 식품 위생이다.

최근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식품의 오염 가능성 증가, 방사선 조사 등 새로운 가공 기술의 사용에 따른 유해 물질 생성에 대한 의구심 증가, 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해 물질의 발견, 수입 식품의 급증 등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좀 더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좀 더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권리이며 욕구이고, 이와 같은 욕구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것 같다. 최근에 아프리카 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곡물중 존재할 수 있는 잔류 농약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강력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식품의 안전성은 빈부나 국가 발전 정도에 관계없이 전세계인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식품위생에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단체는 국제식품기준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CODEX와 WTO의 SPS협정문과 TBT협정문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리 나라 유가공 식품 산업체에서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WTO와 CODEX의 상관관계를 논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국제식품기준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1. CODEX의 정의 및 성격

우리가 통상 "CODEX"라고 부르는 "CODEX 국제식품기준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1962년에 설립된 정부간(intergovernmental) 모임체로써 현재 회원국 수는 156개국이며 우리 나라는 1971년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81년에 가입하였다. Codex Alimentarius는 라틴어로서, Codex는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food)을 말하며, 따라서 Food Code(식품법)라는 뜻이 된다. 즉,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을 포함하는 식품법전이라 할 수 있다.

CODEX는 강제적인 성격이 아니라 각국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락: Accept) 식품의 관리상 일종의

지침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 (recommend)하고 있다. 즉, 권장 성격의 기준 규격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주로 CODEX의 기준규격 중에 잔류농약에 관한 규격을 받아들여 식품공전 식품중 잔류농약기준설정에 참고를 하고 있다.

2. CODEX의 설립 목적

CODEX의 설립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1) 식품으로 인한 인간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여 세계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우수한 품질, 안전성, 그리고 영양분을 보장하고, 2) 국가간 식품의 원활한 교역을 도모하는데 있다.

3. CODEX의 설립 배경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61년 제11차 “FAO 컨퍼런스”와 제29차 “WHO 집행이사회” 및 “FAO/WHO 합동식품규격에 대한 컨퍼런스”의 권고에 따라 1962년에 설립된 “FAO/WHO 합동식품규격 사업단(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의 사업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필자주: 따라서 FAO/WHO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또는 영문 약자로 CAC), 또는 CODEX로 불러야 할 것이다.

4. CODEX의 기본기능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을 망라하여 공히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대상이나 사용량에 대한 규격설정, 오염물질(잔류농약, 잔류수의약품, 중금속,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규격, 식품표시 등 식품의 안전성과 원활한 통상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5.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조직

1962년 FAO/WHO에 의해 CODEX가 설립된 이래 CODEX총회는 이태리 로마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2년마다 한번씩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97년의 총회는 22차 총회로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97. 6. 23~28). CODEX임원들은 FAO/WHO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무국장은 로마에 있는 FAO의 Food Policy and Nutrition Division에 상주하게 되어 있다.

CODEX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있고, 실제 규격 지침서 및 권장기준 설정 업무를 담당하는 CODEX의 하부조직은 CODEX 규정 IX. 1(b)(i)항에 의거한 8개의 CODEX일반과제 분과위원회(World-wide Codex General Subject Committee), 14개의 CODEX식품별 분과위원회(World-wide Codex Commodity Committee) 및 지역(유럽) Codex 분과위원회인 Codex 천연광천수 분과위원회와 CODEX 규정 IX. 1(b)(ii)항에 의거한 5개 Codex 지역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및 ECE/CODEX 합동 전문가 그룹 Codex 급속동결식품 규격화 분과위원회, Codex 과일 주스류 규격화 분과위원회가 있다(그림 1).

6. CODEX 관련 국제단체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WTO 시대가 열린 이때 CODEX와 같은 국제식품 규격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식품의 무역이 활발해짐

Codex 일반과제
분과위원회

- Codex 식품중 잔류수의약품
분과위원회 (미국)
-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네덜란드)
- 잔류농약(네덜란드)
- 일반원칙(프랑스)
- 식품표시(캐나다)
- 식품위생(미국)
- 분석 및 시료채취방법(헝가리)
-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호주)

Codex 식품별분과위원회

- Codex 코코아제품 및
초코렛 분과위원회(스위스)
- 당 류 (영국)
- 유제품 (영국)
- 병과류(스웨덴)
- 스프릿프로스(스위스)
- 식육위생(뉴질랜드)
- 식물성단백질(캐나다)
- 우유 및 유제품(뉴질랜드)
- 영양 및 특이식이용식품(독일)
- 가공과채류(미국)
- 어류 및 수산제품 (노르웨이)
- 가공식육및가금육제품(덴마크)
- 곡류 및 두류(미국)
- 파실 · 채소류 (멕시코)

지역 Codex
분과위원회

- Codex 천연광천수
분과위원회(스위스)

지역조정위원회

- Codex 아프리카
지역조정위원회
- 아시아
- 유럽
- 남미 및 카리브
- 북미 및 남서태평양

ECE/ CODEX
전문가 그룹 합동

- Codex 급속동결
식품규격화분과위원회
- 과일류스류

• 현재 휴회중이나 필요시 재개가능(필자주 : Codex 우유 및 유제품 분과위원회는 1993년에 신설됨)

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과 무역의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국제연합 WHO/FAO의 노력에 의해 선진국, 중진국, 또는 후진국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국제식품기준 규격, 즉 CODEX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기준 규격을 설정하기 위해 돕고 있는 여러 국제협력기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s' Union (IOCU),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IDF)와 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ILSI) 등이 있다.

7. Codex 우유 및 유제품 분과위원회 (Codex Committee on Milk and Milk Products)

1) 개 요

1962년 규정 IX. 1. (a)에 의거하여 생성된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하부조직으로써 “유 및 유제품에 적용할 일반원칙 규범을 위한 FAO/WHO 합동 정부전문가 분과위원회(Joint FAO/WHO Committee of Government Experts on the Code of Principles concerning Milk and Milk Products)”로 생성되어 “FAO/WHO 합동식품규격사업단”에 흡수되었으며 그후 1993년에 “Codex 우유 및 유제품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규정 IX. 1(b)(i)에 의거한 하부조직이 되었다.

2) 주최국 및 회원국: 의장국 : 뉴질랜드, 회원국 : 52개국

3) 회의 개최

1차 Rome, 11. 28~12. 2, 1994

2차 Rome, 5. 27~5. 31, 1996

4) 업무범위

Codex의 규격 설정 체계와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일반 규범”내에서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국제 규범 및 규격의 설정

5) 지금까지 규격설정현황 및 추진중인 작업

○ 규격설정현황

- 유 및 유제품 규격 : 18개

- 개별치즈 규격 : 35개

○ 현재 추진중인 작업

- 차기 총회로 이관될 문제

· 제 8단계의 버터, 유지방제품, 농축유류, 가당농축유류, 분유 및 크림 분말, 치즈 및 유청치즈 및 연장치즈에 대한 규격안의 채택

· 제 5단계의 유 및 유제품과 관련한 원칙규범개정초안의 채택;

- 유제품 스프레드 및 모짜렐라에 대한 개별치즈규격 제정을 시작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할 것과 Codex 식품 수출입 및 검사체계 분과위원회에 의해 수출인증모델을 제시할 것.
- 다나브루, 그뤼에르, 거드브랜즈달소스트, 노르베지아 및 에스롬에 대한 개별 치즈규격의 삭제; 몇몇 블루 바인드 치즈에 대한 개별 치즈규격으로부터 다나브루, 아델로스트 및 블루 치즈의 삭제 및 생치즈를 포함한 비숙성 치즈에 대한 규격을 크림치즈에 대한 개별 치즈 규격을 삭제.

○ 기타 의제 관련 문제들

- 비숙성 치즈규격의 제목을 ‘생치즈를 포함한 비숙성 치즈 규격’으로 개정하고 이의 재규격화 및 정부 논평을 받기 위해 제 6단계로 회부.
- 가공 치즈, 크림 및 개별치즈(삭제하고자 하는 규격 제외)에 대한 개정규격초안 및 농축유류, 발효 후 열처리한 발효유류로 제조한 유제품 및 유제품 스프레드에 대한 규격 초안을 3단계로 회부 및 국제낙농협회에 이번 회기에 제출되거나 작성된 의견을 총회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유제품에 대한 영양 및 품질 정의를 정부논평을 듣기 위해 3단계로 회부.
- 국제낙농협회에 이번 회기에 제출되거나 작성된 의견을 토대로하여 열처리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검토될 통일문서의 작성을 요청하기로 함에 동의.
- 관련 Codex 위원회들에 유 및 유제품과 관련한 원칙규범개정초안의 다음의 조항을 알리는데 동의.
 - 성분이 조정된 유제품에 대한 4.3조를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 검토에 대한 8조를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에(18항).
- Codex 식품위생 분과위원회에 다음을 알릴 것에 동의.
 - 모든 유 규격의 위생 규정에 저온살균에 대한 언급을 삽입하자는 미국의 제안서; 및 버터의 미생 물학적 기준에 대한 우루과이의 제안서.
 - 이번 회기에 제출되거나 작성된 의견들과 함께 비염지/비숙성 치즈 및 숙성 연질 치즈에 대한 위생 실행규범안에 대하여 회기중 검토된 문서를 Codex 식품위생 분과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것에 동의.
-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에 대한 IDF/ISO/AOAC 작업단에게 유청 단백질/카제인 비율에 대한 적절한 분석방법을 증명할 것을 요청.
- Codex 식품 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에 식품첨가물에 대한 문서를 보내 식품첨가물 사용의 기술적 정당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필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데 동의.
- 치즈 코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연구할 것에 동의.
- 유단백 제품의 명칭을 Codex 포장식품의 표시에 대한 일반규격 내의 성분 분류명의 목록에 삽입 시키기 위해 Codex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 보내기로 확정.
- 다음 회기에서 검토될 ‘파르마’ 치즈에 대한 규격 제정에 대한 무역상의 입장 및 정당서에 대한 문서 요청.
- “충전우유”는 이 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 외의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Ⅲ.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1. WTO의 출범

7년여의 오랜 시련 끝에 UR협정이 타결되고, 바로 19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설립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WTO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어 1995년 1월 1일 부터 WTO가 발족되어 국제적인 경제 질서는 국경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현재 회원국은 112개국 이지만 GATT회원국인 125개국이 모두 WTO의 회원으로 될 예정이다.

이렇게 WTO시대가 도래한 후 통상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는 전세계 통상국들이 통상마찰 요인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역시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품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변화에 민감해지고 또한 WTO협정문을 수용하여 국제적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및 산업계의 지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WTO의 목표 및 협정문

WTO는 세계인의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 생산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증대를 목표로 되어 있다.

WTO협정문의 구성은 전문 16조와 부속서 1의 상품교역에 대한 12개의 개별 협정문, 부속서 1B의 서비스 무역, 그리고 부속서 1C에 지적재산권, 부속서 2의 분쟁해결 규칙, 부속서 3은 무역정책 검토기구 및 부속서 4 복수간 무역협정으로 되어 있다. 부속서 3까지는 WTO가입에 의하여 자동 가입되어 권한과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며, 부속서 4는 4개의 개별협정문으로 되어 있어 이중 하나만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실정이다.

3. SPS 위원회 활동

SPS협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각종 지침서의 작성, 용어의 해석 등의 작업과 SPS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PS위원회가 있으며, 그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SPS위원회는 1995년 이후 매년 3회 씩 열려 올해 3월 제 7차 회의를 하였으며, 논의중인 주요 내용으로는 8개의 국제기구 (IPPC, CODEX, OIE, WHO, FAO, ISO, ITC, UNCTAD)에 업서버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기타 6개의 국제기구가 업서버의 지위를 신청 또는 논의 중에 있다.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금번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각국은 자국의 수출에 방해가 되는 국가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투명성 규정에 대한 운영 방안과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국제규격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제도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타 위해분석 등에 대한 일관성과 기술 지원 및 협력 등의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다.

4. SPS와 TBT 협정문

세계무역기구(WTO)하에 상품교역에 대한 12개의 개별협정문이 있는데 이중 식품의 교역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으로 회원국 정부의 강제 이행 사항이나 WTO와 CODEX기준규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협정문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문(SPS협정문)

본 협정문은 본문 46조(적용범위에 대한 조항, 각국의 기본권리 및 의무, 조화, 위해평가 및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제의 적정 보호수준 판단, 동등성의 인정, 해충 또는 질병발생 자유지역 및 저해충 또는 질병 발생 지역 등 지역조건의 채택, 관리, 검사 및 인증제도, 기술지원, 특별대우, 협의 및 분쟁타결, 행정, 적용, 최종규정)와 3개의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협정문에는 식품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검역사항도 포함하고 있지만, 식품관련 사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식품중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잔류수의약품, 중금속, 기타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와 관련된 모든 기준·규격, 지침서, 분석방법 및 위생과 직접 관련된 포장 및 표시규정을 국제간에 인정된 국제기준·규격의 채택을 통하여 국제간에 서로 조화시키거나, 만약 일치시키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위해평가를 근거로 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상기 4개분야의 회원국의 기준·규격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SPS협정문의 제 9조를 보면 식품의 국제 무역시 적용할 국제 규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9조 : 식품검역의 국제간 최대한의 조화를 위하여, 합의당사국은 식품검역조치가 국제규격·기준에 근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Contracting parties shall base their sanitary measures o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이때 국제간에 인정된 국제기준·규격이란, GATT 사무국의 설명서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인정된 식품의 안전성 규격과의 조화라 함은 CODEX에서 설정한 규격에 근거함을 의미한다”(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food safety standards would mean basing national requirements on the standard develop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이하생략)로 되어 있다. 또한 SPS협정문 제 12 조를 보면,

12조 : 합의당사국은 CODEX 활동에 최대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Contracting parties shall play a full part.....)라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식품의 통상마찰이 커질 상기 설명한 4가지 분야에 대하여서는 CODEX가 설정한, 또한 앞으로 CODEX가 설정할 기준·규격은 각국이 준수하여야 할 강제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수입식품에 적용할 상기 4가지 분야에 대한 기준·규격을 CODEX의 기준·규격과 일치시키거나,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쌀에 대한 잔류농약기준 등)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SPS협정문 제 11조에 설명이 되어 있다.

11조 : 합의당사국은 과학적인 근거(scientific justification)와 위해평가 (assessment of risk)에 의하여 타당한 경우에만 국제기준·규격보다 높은 수준의 식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Contracting parties may introduce . in a higher level.....).

이와 같은 합의문 초안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까지 무역상 기술적 장벽 (Technical Barrier to Trade : TBT)상 예외로 인정되어 왔던 수입식품의 검사도 TBT의 하나로 보는 추세이며, 본 합의문은 WTO발족 이후에는 TBT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기 합의문에서는 합의당사국이 국민보건을 위한 모든 검역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그와 같은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는 CODEX 규격·기준을 수락하거나, 아니면 수락하지 않는, 위해평가 (risk analysis)를 통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게 되었다.

모든 강제규정, 기준, 적합성 판정 절차들은 TBT나 SPS협정문 중 하나의 협정문에 적용받아야 한다. 어떠한 협정문을 적용받을지는 조치의 목적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 동식물 질병이나 식품중의 병원성미생물, 독소, 오염물질, 식품첨가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SPS에 적용을 받고, 조치의 목적이 품질, 표시, 외관, 포장의 크기, 용량 등에 관한 것이라면 TBT협정문에 적용을 받는다.

SPS협정문에는 “식품, 음료, 사료내의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병원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회원국의 국민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부속서 1의 정의 (b)에 명시되어 있다(Any measure applied to protect human or animal life or health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risks arising from additives, contaminants, toxins or disease-causing organisms in foods, beverages or feedstuffs.). 따라서, 국제적인 교역에 있어서 식품과 관련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병원균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SPS협정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SPS협정문 중 식품 관련 핵심사항

○ 과학적 정당성 (제3조 3항)

SPS협정문에서는 WTO 회원국 정부가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의 통상을 제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원리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과학적 근거에 의하면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는데도 식품의 교역에 제한을 주는 것은 SPS협정문에 위배된다.

○ 동등성 (Equivalence; 제4조)

모든 국가는 수입식품이나 내국산 식품을 동등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식품은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한 곳에서만 검사를 할 수 있고, 내국산식품은 어느 실험실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등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 조화(Harmonization; 제3조)

○ 투명성(Transparency; 제7조)

일반 국민이나 교역상대자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정책 결정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투명성이라고 한다. 요청시에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식품의 통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률규정을 입법예고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심있는 국가나 교역상대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60일)을 주어야 한다. 회원국은 접촉창구를 설립하여야 하고 접촉창구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접수받는다.

○ 일관성(Consistency; 제5조)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TBT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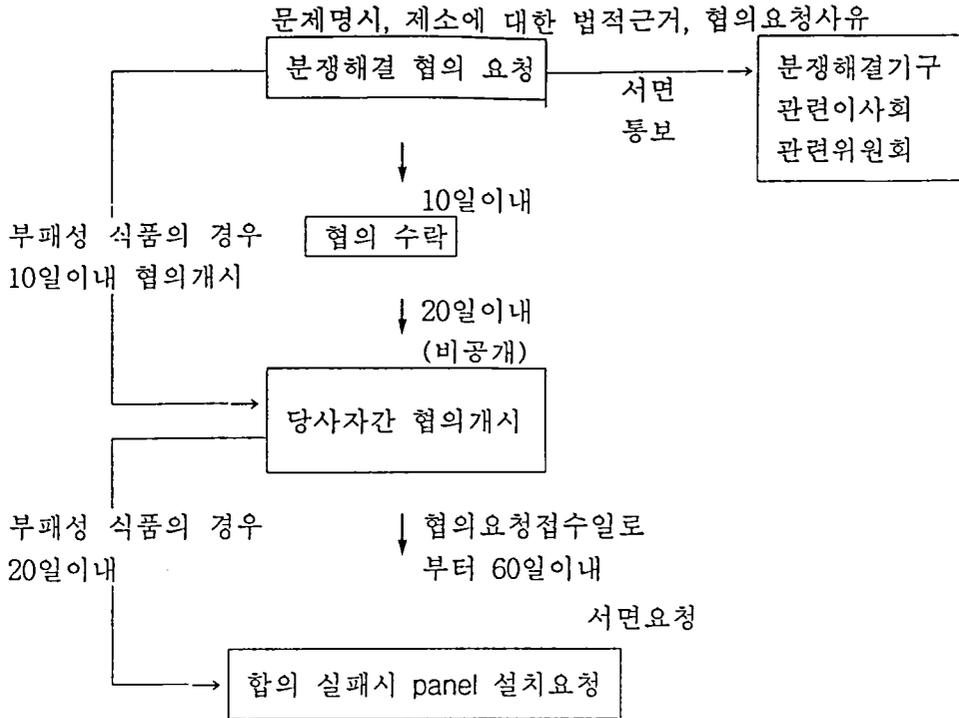
본 협정문을 식품관리분야에서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SPS 협정문에서 정의된 4개 분야 이외의

WTO 위생 및 동식물 검역 규제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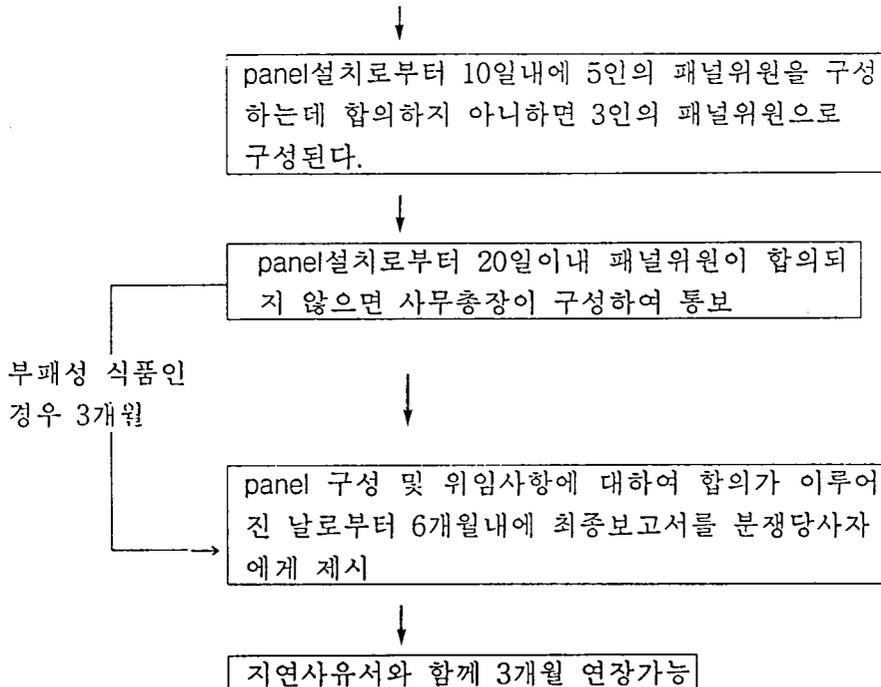
G/SPS/N/MYS/2 : 1997. 2. 10. (97-0483)

통지 사항

1. 협정 통지 회원국 : 말레이시아
2. 담당부서 : 농무부, 수의국
3. 대상품목 : 유 및 유제품
4. 통지문의 제목 및 장수 : 수입 유 및 유제품의 규격
5. 내용 설명 : 본 규정은 특정 수의 위생인증서를 합리화하기위하여, 수입 우유에 대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건에서 개정하였음. 특히 BSE free 증명 등의 요구사항을 삭제함.
6. 목적 및 근거 : 국민과 가축의 보건
7. 국제적인 규격, 지침, 권장 사항이 없음 () 국제적인 규격, 지침, 권장 사항이 있는 경우, 차이 명기 : OIE에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였음.
8. 관련 문서 : 동물수입령, 1962
9. 승인 일시 : 미정임.
10. 효력 발생 일시 : 1997. 2. 1.
11. 논평 마감일 및 제출처 : 1997. 4. 1., 말레이시아 동물국
11. 자료 입수처 :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9th Floor, Exchange Square Off Jalan Semantan Buikit Damansara 50630 Kuala Lumpur Tel : 603-2-54-00-77 E-mail: krishnan@jph.gov.my Fax: 603-2-54-0092



패널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도 합의되지 않으면 panel은 다음의 위임사항을 부여받는다. (문제조사, 협정에 규정된 권고나 판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결과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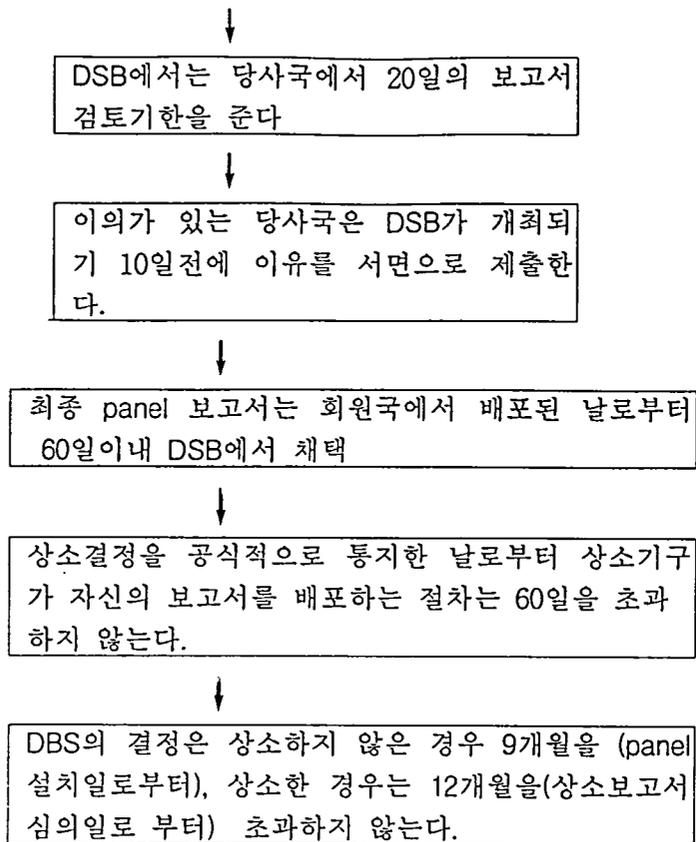


그림 2. WTO의 분쟁해결 절차

식품관련 모든 기술장벽에 적용되는 협정문으로써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여부를 평가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술장벽이란 “포장, 표시, 등급표시 요구를 포함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강제적 성격의 규격)과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특히 UR협정에서는 최종제품에 적용하는 규격뿐만 아니라 “ISO 9000 계열” 등과 같은 품질시스템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공정 및 생산방법(PPMs: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까지를 기술규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식품의 위생규제 이외의 식품과 관련된 모든 규제는 본 협정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BT 협정과 Codex와의 연관은 현재로 아주 깊다고 할 수는 없다. 즉 TBT 협정 측면에서 우리가 상기한 4가지 분야 이외의 Codex 기준·규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다만 앞으로 확정될 TBT 위원회의 세부방침은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변화내에서 CODEX의 앞으로의 위상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며, 최근의 CODEX 식품의 수·출입검사와 인증제도 분과위원회 설립, 규격 등의 제정시의 급행수순(Accelerated Procedures)의 설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CODEX규격·기준이 국내법화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권고적 성격이었던 규격·기준이 강제화됨에 따라 기존의 식품규격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새로운 규격·기준이 설정 등에 의한 각국의 이해가 대립되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 즉 식품규격의 국제적인 조화는 계속 추진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식품의 주요 수입국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CODEX규격 및 기준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관심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TBT협정문에 의해서는 무역마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원인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통상마찰을 유발할 회원국의 수(45개국)가 적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과거의 TBT협정문에는 자체의 논쟁해결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TBT협정문은 WTO의 포괄적인 논쟁해결(umbrell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과정하에 있다. 셋째로, 과거의 TBT협정문은 가공공정이나 생산방법은 포함하지 않았고 단지 최종제품의 특성만을 포함하였다. 과거의 TBT협정문하에서 도출된 논쟁은 가공공정에 관한 것들이었다. 쇠고기 생산에 호르몬제의 사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표 1. TBT와 SPS협정문의 비교

	TBT 협정문	SPS 협정문
범 위	강제규정, 자가규격, 적합성 판정 절차	식품에 의한 위해로부터 인간을 보호, 사료로부터의 동물건강 보호 및 식물보호 목적의 모든 조치
주요관점	적용된 조치 (Applied measure)	조치의 목적
대 상	품질, 표시, 외형, 용량, 포장 크기에 관련된 규정	식품중의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병원성미생물로부터의 위해인자 위생과 관련된 검사, 인증, 시험, 표시

IV. 식품산업과 CODEX

모든 식품관련 규정들은 국민 건강 보호, 기만으로부터의 보호, 공정한 교역의 보장, 그리고 소비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전통적인 차이 때문에 각국의 식품관련 규정들은 상이하여 식품이 전세계로 교역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1950년대 후반부터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조화(Harmonin)될 수 있고, 비관세장벽(Non-tariff trade barriers)이라고 불리는 문제점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CODEX 라고 할 수 있다. 30여년 이상 식품법규와 식품산업체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식품산업계는 그들의 지식, 경험, idea를 국제기준규격의 조화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각국의 식품관련 법규는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일 맥주와 일반 맥주는 다르고, 영국초콜릿은 continental 초콜릿과 다르고 같은 제품명을 갖는 식품이 성분이 다를 경우가 많다. 더욱이 식품첨가물이나 오염물질에 대한 국가별 차이는 무역에 커다란 장벽이 되어 왔다. 국가별로 다른 독성학적 평가를 사용한다면 식품

첨가물에 대한 조화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하여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잔류수의약품, 농약의 독성학적 평가 자료는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와 JMPR (Joint FAO/WHO Meeting on Pesticide Residues)에서 CODEX에 제공하고 있다. 식품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평가자료를 전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CODEX에서는 과거에 설정되었던 규격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 및 유제품의 기준 규격 수정작업에 도입하였고 어류 및 수산제품, 초콜릿, 곡류가공품, 유아식 등 많은 식품들의 기준규격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정작업에는 식품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의 기준규격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준규격은 신제품을 수용할 수 있게 설정되어야 하고, 지역적인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는 기준 규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ODEX 기준 규격은 과거에 전전하지 말고, 미래의 식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준 규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SPS협정에서는 각국 정부에 국제규격으로서 CODEX의 기준 규격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SPS에서는 기준, 지침, 권고를 동일하게 간주한다. 특히 SPS 협정문에서는 위생실무지침 및 규정,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오염물질, 잔류농약, 잔류수의약품,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CODEX 기준에 준하고, 동물위생은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식물위생의 경우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의 기준에 준한다. 따라서 CODEX 기준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WTO에 의해 통상마찰을 유발시킬 염려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공중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CODEX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규격을 설정할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CODEX 기준 규격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WTO에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강제기준 규격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다.

V.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CODEX의 앞으로의 위상변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이란 식품업계 또는 정부 단독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행정적 차원에서의 정부의 노력과 기술적 차원에서의 식품업계의 노력이 맞물릴 때에만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CODEX에의 대응방안도 양분하여, 수입되는 식품의 관리 측면에서의 정부의 대응방안과,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식품산업의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기술해 보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식품도 수입국에서 보면 수입식품이므로, 이 두가지 대응방안은 깊게 서로 연관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분리가 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누어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 관리 측면에서의 정부의 대응방안

SPS협정의 타결에 따라, 각국은 자국이 유지하고 있는 식품관련 규격중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잔류수의약품, 중금속, 기타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관련 규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Codex의 관련 규격을 이용할 것으로 보임)과 일치시키거나,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기준·규격 설정의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제화 작업반”을

구성하고, 국립보건원 및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함께 수입식품에 적용되는 상기 4가지 규격의 국제간 조화, 즉 CODEX 규격과의 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출면에서 생각해 보면, 타국들도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상기 4가지 규격은 국제적으로 서로 조화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상기 4가지 분야에 대하여는 CODEX에서 계속적으로 기준·규격 설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되는 Codex 분과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 “Codex 잔류수의약품 분과위원회”)와 각 식품별 기준·규격에도 관련 규격이 설정되고 있으므로 이들도 일부 포함되어야 하며,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 및 “Codex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의 기준·규격 설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 반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식품 관련 기준·규격에는 상기한 4가지 규격 이외에, 표시기준, 품질기준, 유통기준 등 여러가지가 있고,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기타의 기준·규격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TBT 협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TBT 협정상에 관리되는 기타 기준·규격은 과학적 근거 이외에, 기술적 사항, 그 사회의 여건 및 정당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밖에 없어 국제간의 조화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TBT 협정에서도 각종 기준·규격을 국제간에 인정된 기준·규격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후, 지역 또는 기술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간에 인정된 기준·규격에 근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식품의 관리측면에서만 본다면, Codex 식품별 규격, 기준, 표시기준 등 기타의 기준·규격은 현재로는 별 의의가 없고,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참고, 이용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TBT협정의 해석 및 운영방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변성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의 의견반영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2. 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Codex의 지금까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Codex가 식품의 수출촉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Codex의 기준·규격이 강제성이 없는 각국이 수락해 주기를 권고하는 임의 성격의 기준·규격이어서, 각국의 수락, 적용이 극히 저조하였고, 지금까지 GATT 20조와 TBT상, 식품위생 관련 기준·규격을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각국이 나름대로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이 기준·규격에 일치하는 식품의 수입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식품이란 그 특성상 대단히 다양하고, 지역에 따른 차이가 커서 일률적인 규격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다.

물론 Codex의 규격·기준은 각국의 식품 품질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고, 특히 개발도상국중 식품수출국에는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1969년 국가 Codex 위원회를 설립하고 Codex의 규격·기준·규범 등을 적용하여 1989년에는 1969년의 12배가 넘는 48억 달러의 식품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UR협정 타결에 따라, 일부분이기 는 하지만, 오염물질 등에 대한 각국의 기준·규격의 국제간 조화가 강제화 되고, 이에 Codex 규격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식품의 수출촉진 측면에서도 Codex에 대한 이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외에 Codex 기준·규격을 우리나라 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참고서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어떠한 제품의 Codex 규격을 설정하여, 그 규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원료의 생산이나 제조기술상 타국이 넘볼 수 없는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이와 같은 사항이 우리의 대응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Codex에는 200여개 이상의 식품별 규격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이 촉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촉진 및 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산업의 Codex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dex 규격·기준에 대한 연구 및 이해증진이 요구된다. 국제 식품규격의 조화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역으로 말해 보면 우리나라의 식품수출도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장점을 최대한으로 취하기 위하여는 먼저 Codex 규격·기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깊은 연구가 먼저 선결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업계 자율적인 위원회, 예를 들어 식품표시 등 일반과제를 다룰 위원회와 식품별 규격을 다룰 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Codex 활동에 대한 의견종합 및 대정부 전달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본과제는 상기 과제와 연계시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특히 업계 의견의 대정부 전달기능을 강화하여, Codex 한국대표단을 통하여 업계 의견이 충분히 규격·기준의 개정 및 설정시 반영되도록 되어야겠다.

셋째, Codex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odex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으므로 식품업계에서도 Codex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되어야겠다.

이와 같은 Codex활동에의 참여란 업계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의 작업내용의 검토, 회의참석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Codex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자료수집방안 및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참여방안도 강구되어야겠으며 Codex각 분과위원회 외에 식품업계가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JECFA)
- FAO/WHO 합동 잔류농약회의 (JMPR)
- 식품의 방사선조사에 관한 국제자문단그룹 (ICGFI)
- FAO 산하 식품관리 및 소비자 보호국 (FC & CP)
- 국제소비자연맹 (IOCU)
- WHO 산하 건강 및 환경위원회
- GATT

넷째, Codex 규격·기준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Codex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결과는 식품업계 종사자에게 폭 넓게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Codex에서 제정한 규범은 현재 식품업계의 위생수준 향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의 최대한의 이용이 요구된다.